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878호, 2024.1.2. 공포, 2024.4.3. 시행 및 2024.7.3.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 1) 기술료를 징수한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현황, 해당 기술실시계약 현황, 기술료 징수 현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1항)
- 2)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현황, 해당 기술실시 현황, 납부대상액 산정 현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나. 직무발명 사용계약 관련 절차상 미비점 보완

- 1) 직무발명 사용계약 서류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함(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 2) 영 제23조제1항 단서 조항 삭제에 따라 직무발명의 무상사용을 결

정 시 현행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 3)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직무발명 사용계약 체결에 따른 사실을 보고할 경우 보고 기한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안 제8조제4항)

다. 해외농업기술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1) 협력 상대국과 해외농업기술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안 제9조제1항)
- 2) 센터에 협력사업 지원 위한 전문가 파견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다자간”을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양도·대여계약 등)”을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관 등(이하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현황
2. 해당 기술실시계약 현황
3. 기술료 징수 현황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공동연구사업의 개요”를 “연구개발과제의 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기술실시 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

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3. 납부대상액 산정 현황

제7조의 제목 “(기술료의 감면)”을 “(납부액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려는 공동연구기업등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료”를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납부액”으로, “면제받으려”를 “감면받으려”로, “기술료 감면”을 “납부액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공동연구기업등임”을 “공동연구개발기관등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진흥원의 장은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그 신청현황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영 제8조제2항”을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의 사용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료 예정가격을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공무원과”를 “공무원 등과”로, “공무원이”를 “공무원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

2항”을 “법 제2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센터(이하 “해외농업기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 협력 상대국과 해외농업기술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외농업기술센터에는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과의 협력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납부액 감면 신청서

연구개발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소계	
		1차						
		2차						
		3차						
합계								
연구개발 성과 활용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기간			
	지식재산권 종류				실시유형			
	지식재산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등록(출원) 번 호				등록(출원) 일 자		
	연구성과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전자우편			
납부대상 액 산정내역								
납부액 감면	감면 근거							
	감면 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 내역							
「농촌진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 성과 사용에 대한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공동연구개발기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 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기술 분야 <u>다자간</u> 협력 에 관한 업무		2. ----- <u>양자간 또는 다자간</u> -----		
제6조(<u>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 양 도 · 대여계약 등</u>) ① <u>공동연구 에 참여한 기업 등(이하 “공동 연구기업등”이라 한다)</u> 은 법 제 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 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사용 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 게 양도 · 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농촌진흥청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공동연구기업등은 영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과 지식재산권의 사용 · 양도 · 대 여 · 수출에 관한 기술료 납부		제6조(<u>연구개발 성과의 실시 보고 등</u>) ① <u>공동연구에 참여한 기관 등(이하 “공동연구개발기관등” 이라 한다)</u>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현황</u> 2. <u>해당 기술실시계약 현황</u> 3. <u>기술료 징수 현황</u>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동연구사업의 개요
2. 해당 지식재산권의 범위
3. 사용기간 또는 대여기간
4. 기술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

③ 공동연구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료 납부 계획서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 기술료 납부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서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료의

②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 영 제 8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연구개발과제의 현황
2. --- 기술실시 현황
3. 납부대상액 산정 현황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제7조(기술료의 감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려는 공동연구기업등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료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기업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3. (생략)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①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

제7조(납부액의 감면)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납부액-----

----- 감면받으려-----

--- 납부액 감면 -----

--.

1. 공동연구개발기관등임-----

2. 3. (현행과 같음)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① -----

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1. · 2. (생략)

3.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
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생략)

②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료 예정가격을 같이 결정하여야 하고,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의 장은 농촌진흥청

----- . 이 경우 진흥원의 장은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그 신청현황을 농촌
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준용
되는 영 제8조제2항 -----

4.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직무
발명의 사용을 유상 또는 무상
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
여야 하며, 유상으로 하려는 경
우에는 그 기술료 예정가격을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_____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 직무
발명 사용계약 상대방과 직무발
명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략)

2.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농촌진
흥청이 가지는 지분율(농촌진
흥청 소속 공무원과 농촌진흥
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같이 직무발명을 하여 그 지
식재산권의 지분을 서로 나누
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한다)

3. 4. (생략)

④ 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
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
다.

⑤ (생략)

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
영) <신설>

-----.

-----.

1. (현행과 같음)

2. -----

----- 공무원 등과 -----
----- 공무원 등이 -----

3. 4. (현행과 같음)

④ -----

----- 30일 -----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
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
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
센터(이하 “해외농업기술센터”
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 협

<신 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협력사업의 운영이나 국제협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약정에는 협력사업 또는 국제협력협의체 구성의 목적, 협력 분야와 구성원 역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협력 상대국과 해외농업기술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외농업기술센터에는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③ ----- 법 제23조제3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과의 협력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